

서울북부지방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5타경11949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2. 26.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정한수	<u>전자서명완료</u>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2. 6. 8. 압류			배당요구종기	2025. 5. 7.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오동주	3층 301호 전부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주거 주택임 차권자	2021.4.26.~	270,000,000	미상	2021.04.26.	2021.03.22.		
주택도 시보증 공사(오 동주)	제101 동 301호 전부	권리신고	주거 임차인	2021.04.26 ~ 2023.04.26	270,000,000	없음	2021.04.26	2021.03.22	2025.4.22.	
<비고>										
오동주:주택임차권등기권자임 주택도시보증공사(오동주):경매신청채권자로서 임차권자 오동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대위변제 양수인임(권리승계신고 및 배당요구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보증금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함).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

2025타경11949

[물건 1]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411
해성스데이3차
101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22길 12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6층 도시형생활주택

1층 13.16㎡
1층 11.48㎡
2층 126.72㎡
3층 126.72㎡
4층 126.72㎡
5층 126.72㎡
6층 126.72㎡
옥탑1층 13.16㎡(연면적제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3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7.3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411
대 750.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750.6분의 19.1045

감정평가액 290,00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	-----	--------	---------

1회	2026.03.31	290,000,000	29,000,000
2회	2026.05.07	232,000,000	23,200,000
3회	2026.06.09	185,600,000	18,560,000
4회	2026.07.14	148,480,000	14,848,000